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
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 운영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 관계없이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선발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 직위 선발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도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모 직위 대상확대(안 제13조, 제14조)

현재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이하 “담당급”)까지 확대하고 담당급 공모 직위를 대

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나. 공모 직위 지원자격 완화(안 제15조제2항)

과장급·담당급 직위는 역량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함

다. 공모 직위 선발절차 정비(안 제16조, 제17조)

담당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선발위탁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수 조정(안 제6조)

현재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타 법령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 승진요건 미충족자 공모 직위 임용방식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승진요건 미충족자가 공모 직위에 선발시 특별승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공모 직위 임기만료 후 보직관리(안 제19조)

임용제한기간 도과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 뿐만 아니라 담당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사. 개방형 직위 경력기간 설정 자율화(안 제5조)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설정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소속장관으로 변경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 (안 제11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17.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인사혁신처장”을 각각 “소속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달리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해당 개방형 직위 총 임용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속 장관은 4급 또는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장급직위는 제외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

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따라 과장급직위”를 “따른 과장급직위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급직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호”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3호”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급직위”를 “과장급직위 및 제3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담당급 직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원

제16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으로, “위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선발하여”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게 선발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모 직위에의 특별승진임용)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임용후보자로 추천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관련 조항(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다.

제2조(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략)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달리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해당 개방형 직위 총 임용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② (생략) <u><신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소속 장관은 4급 또는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장급직위는 제외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따른 과장급직위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급직위</u> ----- ----- ----- ----- ----- -----

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4·5.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

-----.

1. (현행과 같음)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

4·5.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
급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
 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
 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
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4. (생략)

③ ~ ⑥ (생략)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
 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3
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
 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
 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

----- 과장
급직위 및 제3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담당급 직위----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
원

3.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
 회) ① ----- 제15조제4항

 -----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② -----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
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
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
관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
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
다.

----- 인사혁신
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

--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

발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

라 ---.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

발시험위원회(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게 선발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

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 관리 등)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

-----.

제18조의2(공모 직위에의 특별승진임용)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임용후보자로 추천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연 락 처	(044) 201 - 8351